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7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7권의 특집주제를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그 나라의 정신의식 수준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동물 문제를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수준은 그 나라의 법제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4년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제20a조를 신설하여 국가의 동물보호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U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에 입각한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동물원 동물들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도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5.1.20. 일부개정을 통하여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와 복지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을 특집주제로 하고, 관련 학술논문 3편, 특별기고문 1편으로 하여 「환경법과 정책」 제17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논문은 우리나라 동물관련 입법과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습니다. 한편, 일반연구논문으로는 ‘인도환경소송법제

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는 바, 우리나라의 환경소송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법과 정책」 제17권이 발간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님, 강원대 로스쿨에서 저와 함께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 박시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환경법센터 고수윤 연구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합니다.